



## 현풍중학교 20동(태아관) 체육관 전면보수사업(소방) 소액수의 전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현풍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 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입찰 건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현풍중학교 20동(태아관) 체육관 전면보수사업(소방)

-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 추정금액<br>(A=B+E) | 기초금액<br>(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                 |                 |            |           | 도급자(E) | 관급자 |
| 24,552,000      | 24,552,000      | 22,320,000 | 2,232,000 | -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마. 공사구분 : 소방공사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 불허)
-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자. 본 공사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 ★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다음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br>보험료 | 국민연금<br>보험료 | 노인장기<br>요양보험료 | 퇴직공제<br>부금비 | 산업안전<br>보건관리비 | 합계액        |
|-------------|-------------|---------------|-------------|---------------|------------|
| 365,361     | 482,744     | 48,008        | 0           | 432,827       | 1,328,940원 |

###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8월 21일(금) 20:00부터 ~ 2026년 8월 27일(목) 10:00까지

###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년 8월 27일(목) 11:00, 현풍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용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붙임 7>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현풍중학교 행정실(☎053-235-3942)**

##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수의계약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비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비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8.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65,361 | 482,744 | 48,008    | 0      | 432,827   |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우리학교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 14. 청렴계약 이행

-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5.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제출

-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상기 가.에 따라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협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나. 본 건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 기타사항

- 가. 건적 제출참가자는 본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 및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 나. 본 건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라.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현풍중학교 행정실(☎235-3942)

-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바.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풍중학교 행정실(☎235-3942)
- 사.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  
조화-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 아. 관련 회계예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집행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현풍중학교장**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현풍중학교장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현풍중학교에서 시행하는 **현풍중학교 20동(태아관) 체육관 전면보수사업(소방)**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사는 현풍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현풍중학교장 귀하**

### <붙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  
아  
그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현풍중학교장 귀하

## <붙임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
|---------------------------------------------------|------------------------------------------------------------------------|--------------------------------------------------------------------------------------------------------------------------------------------------|-----------------|
| <b>일반 사항</b>                                      | <b>▣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b>                                               |                                                                                                                                                  |                 |
|                                                   | 1. 학교(기관)명 :                                                           | 3. 업체명 :                                                                                                                                         |                 |
|                                                   | 2. 작업명 :                                                               | 4. 현장책임자:(성명)                                                                                                                                    | (연락처)           |
|                                                   | <b>▣ 계약현황</b>                                                          |                                                                                                                                                  |                 |
|                                                   | 1. 계약금액 :                                                              |                                                                                                                                                  |                 |
|                                                   | 2. 작업기간 :                                                              |                                                                                                                                                  |                 |
|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br>·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b>▣ 안전보건관리계획서</b>                                |                                                                        |                                                                                                                                                  |                 |
| <b>[ 작성자 : 회사명:</b>                               |                                                                        | <b>직책:</b>                                                                                                                                       | <b>성명:</b> (서명) |
| <b>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b>                     |                                                                        |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br>-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 ·현장 종사자 수: 명<br>- 세부작업별: 명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 명<br><br>※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b>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b>                               |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br>-<br>-<br>-<br>-<br>-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br>-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br>-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br>-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br>- |                 |
| <b>③ 위험성평가</b>                                    |                                                                        |                                                                                                                                                  |                 |
| <b>○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b>                            |                                                                        | <b>○ 안전·보건 관리 대책</b>                                                                                                                             |                 |
| 1. 작업명:<br>①<br>②                                 |                                                                        | 1. 작업명:<br>①<br>②                                                                                                                                |                 |
| 2. 작업명:<br>①<br>②                                 |                                                                        | 2. 작업명:<br>①<br>②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          |  |          |  |
|--------------------------------------------------------------------------------------------------------------------------------------|----------------------------------------------------------------------------------------------------------------------------------------------------------------------------------------------------------------------------------------------------------------------------------------------------------------------------------------------------------------------------------------------------------------------------------------------------------------------------------------------------------------------------------------------------------------------------------------|-----|-----|----------|--|----------|--|
| <b>④ 안전점검</b><br>·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br>-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br>-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br>-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br>-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b>⑤ 이행확인</b><br>· 안전조치 이행여부<br>(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  |          |  |
| <b>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b><br>-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br>-<br>-<br>-                     |                                                                                                                                                                                                                                                                                                                                                                                                                                                                                                                                                                                        |     |     |          |  |          |  |
| <b>⑦ 신호 및 연락체계</b>                                                                                                                   |                                                                                                                                                                                                                                                                                                                                                                                                                                                                                                                                                                                        |     |     |          |  |          |  |
| <b>⑧ 위험물질 및 설비</b>                                                                                                                   |                                                                                                                                                                                                                                                                                                                                                                                                                                                                                                                                                                                        |     |     |          |  |          |  |
| <b>⑨ 비상대책</b>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br>->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br><br>◎ 비상연락망<br><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서</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19</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병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관할 고용노동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td> </tr> </table>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  |
| <b>⑩ 재해발생수준</b>                                                                                                                      | <b>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b><br>※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          |  |          |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     |          |  |          |  |

<붙임 5>

## 각 서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현풍중학교장 귀하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7>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현풍중학교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 공사 [ ] 용역<br>[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기타 |                                |
|                | 연락처                        | 주소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 풍 중 학교 장

계약상대자(확인인)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